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미래전략 수립·추진 체계 마련〉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99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총괄적 검토	4
가. 국가미래전략 수립의 중요성	4
나. 우리나라 국가미래전략 추진 체계	5
다. 해외 주요국 국가미래전략 추진 체계	9
라. 개정의 필요성	11
3. 조문별 검토	12
가. 미래전략특별위원회(안 제46조의4 신설)	12
나. 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안 제46조의5 신설)	17
다. 부 칙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 · 허 영 · 홍기원 · 박지원 · 이용선 · 이건태 ·
신정훈 · 박균택 · 진성준 · 김영배 · 박정현 · 강득구 ·
최혁진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 의안번호 : 1519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체계적 심사와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¹⁾」(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과의 협력 등 2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안 제46조의4	○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설치 - ①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 ②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둠(위원 15명, 임기 2년)
안 제46조의5	○ 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미래환경 전망, 정책대안 등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 등 수행

1)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은 미래 환경의 전망·분석에 기초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임.

2. 총괄적 검토

가. 국가미래전략 수립의 중요성

국가미래전략이란 국가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변화와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명확히 설정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핵심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오늘날의 정책 환경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재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세계화의 심화와 국제 경쟁의 증대 및 기후변화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얹혀 있는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음.

이처럼 복잡적이고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단편적 정책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 비전과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특히,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은 물론 국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변화의 다양한 경로와 그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예측·점검하고,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나. 우리나라 국가미래전략 추진 체계

우리나라의 국가미래전략 추진 체계²⁾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행정부가 의제의 설정과 집행을 주도하고, 입법부는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행정부의 경우 대체로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의제를 주도하고, 경제부처(중·장기 기획 및 예산편성 등 소관)가 전략 수립·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정책연구 및 분석을 지원하는 형태임.

[표-2] 정부별 중·장기 전략 담당 주체

구 분	대통령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경제부처
노태우 정부	-	21세기위원회	경제기획원
김영삼 정부	-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경제원
김대중 정부	-	정책기획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노무현 정부	-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이명박 정부	미래비전비서관	미래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박근혜 정부	미래전략수석실	-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86 재구성

이러한 체계를 통해 각 정부는 대통령실·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감독 하에, 경제부처의 지휘와 국책·민간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임기 중 종합미래보고서 또는 전망보고서를 발행하였음.

2)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72 이하 참조

[표-3] 정부별 종합미래(전망)보고서

구 분	사업명	주관기관	보고서 제목
노태우 정부	국가발전 장기구상안	-	21세기를 위한 국가사회발전구상
김영삼 정부	신경제장기구상	재정경제원, KDI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김대중 정부	Vision 2011 프로젝트	재정경제부, KDI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노무현 정부	비전 2030	기획예산처, KDI, 정부민간합동작업단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이명박 정부	중장기보고서 발간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박근혜 정부	중장기보고서 발간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문재인 정부	국가미래비전 2045	정책기획위원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94 재구성

또한, 정부는 주요 정책·사업의 개별 법령에 따라 중·장기계획(기본 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특정 시기(5~10년)마다 소관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립되는 계획은 현재 72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³⁾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5년 단임제와 연동된 구조로 인해 전략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의견⁴⁾과, 각 부처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을 통합적으로 종합·조정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상위 전략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견⁵⁾과 함께 각 보고서 내용이 장기적인 재정전략과 구체적으로

3) 행정안전부, 온나라 지식-국가법정계획 (최종 검색일 : 2026. 7. 16.)

<<https://www.onnara.go.kr/onnara/nationPolicy/list>>

4) 한국행정연구원, 「중장기 국정운영을 위한 국가미래전략공동체 구상에 관한 연구」, 2015. 12., p.21

5)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101

연계되지 못한 탓에 현재와 미래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이라는 국가장기전략 수립의 중요 기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⁶⁾ 등 여러 지적이 있어 왔음.

다음으로, 입법부는 2000년대 들어 미래연구 및 미래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18대 국회에 걸쳐 ‘미래전략 특별위원회’ 또는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바 있음.

[표-4] 미래전략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연혁

구 분	16대 전반기	16대 후반기	17대 국회	18대 전반기
위원회 명칭	미래전략특별위원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2001.3월 ~ 2002. 5월	2002. 10월 ~ 2004. 5월	2004. 9월 ~ 2005. 6월	2008. 8월 ~ 2009. 8월
위원 정수	19명	20명	20명	18명
주요 활동	미래전략 관련 업무보고			
	전체회의 11차례 (공청회 등)	전체회의 7차례	전체회의 10차례 소위원회 6개	전체회의 11차례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112 재구성

이에 대하여는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정부의 미래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기 어려웠고,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의안심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논의 결과가 제도·정책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음.⁷⁾

6)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97

7)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113

이에 국회 차원에서 미래 의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반으로, 국회는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에 설립된 출연 연구기관인 미래연구원을 통해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다. 해외 주요국 국가미래전략 추진 체계

해외 주요국의 사례⁸⁾를 살펴보면, 각국의 정치제도나 행정문화 등에 따라 추진 체계의 구조와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나, 입법부 중심형 중에는 핀란드를, 행정부 중심형 중에는 싱가포르가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우선, 핀란드⁹⁾는 지난 1993년 세계 최초로 의회 차원의 미래 전담 기구인 미래위원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한 후 2000년 상임위원회로 개편하여 30년 이상 미래전략 논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는데, 이는 개정안에 따른 ‘미래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미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5명 등 총 17명의 정위원으로 구성되고, 특정 부처 소관을 초월하는 임무 특성상 총리실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의안심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의제를 설정하여 논의할 수 있음.

미래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정부가 4년 주기로 제출하는 ‘국가 미래정책 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광범위한 전문가 청문회 및 시민사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발표하는 것임.

아울러, 미래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의 법안 및 정책 심사 과정에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래지향적 관점에 기반한 위원회 의견서를 제공하며, 국가 미래정책 보고서에 대해 심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8)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57 이하 참조

9) EDUSKUNTA RIKSDAGEN(최종 검색일 : 2026. 1. 17.),

<<https://www.parliament.fi/EN/valiokunnat/tulevaisuusvaliokunta/Pages/default.aspx>>

이와 같이 의회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미래전략 논의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국회의 상시적 심의 체계가 국가미래전략의 일관성·연속성 측면에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임.¹⁰⁾

다음으로, 싱가포르는 총리실 산하 전략정책실 및 전략미래센터(CSF)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정부의 전략 기획, 정책수립 및 예산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 ‘위험평가와 환경스캐닝(RAHS,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으로 불리는 국가 차원의 미래예측·전략분석 시스템임.

RAHS는 다양한 부처와 정보기관,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적 분석 체계로서, 글로벌 경제 변화, 기술 혁신, 사회 갈등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책 선택에 따른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음.

아울러, 싱가포르는 미래전략 기획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부 부처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다국적 기업까지 참여시키는 것으로 파악됨.

이와 같이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시나리오와 파급효과를 상시 분석하고 이를 정책 및 예산 과정에 직접 연계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전략에 대한 상시적 분석 시스템과 이를 의사결정 절차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보임.¹¹⁾

10)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64 참조

11)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2019. 12., pp.73-74 참조

라.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은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에 따라 미래 환경에 대한 전망·분석을 기초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가 미래연구원의 전문적 지원을 받아 미래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상시적으로 심의·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미래전략이 정부 주도의 보고서나 계획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정치 일정이나 대통령의 임기 내 국정과제에 종속되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가 단기적인 국정 운영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정부 또는 정책 기조의 변경에 따라 국가미래전략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가 수립·제출한 국가미래전략을 국회가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 국가미래전략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략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국회미래연구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므로, 단기적·분야별 정책대응을 넘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조문별 검토

가. 미래전략특별위원회(안 제46조의4 신설)

개정안은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 및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미래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함.

[표-5] 개정안 조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4(미래전략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둔다. 1.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 2.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 ②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

개정안은 국회에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장기적 미래 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을 전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상시적 심의를 통해 국가미래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미래특별위원회를 현행법 제45조¹²⁾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려는 것임.¹³⁾

- 12)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13) 참고로, 현행법 제44조는 국회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구성 시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미래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 등이 산업·노동·복지·기후·안보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범정부적 의제로서, 특정 상임위원회가 담당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심사·조정이 곤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간 정합성을 점검하며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미래보고서 및 연도별 추진보고를 심사하여 국가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점¹⁴⁾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상설 기구가 보다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것은, 소관 업무인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가 재정 전반의 총괄적 조정과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 등 범정부적 조정이 요구되어 정부 부처별 기능에 따라 구성되는 특정 상임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연례적·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에 기인함.

14)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제7조(국회 심사 및 권고) ① 미래보고서의 심사는 「국회법」에 따른 소관 위원회 심사에 따른다.

② 국회는 미래보고서 및 이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연도별 추진보고) ① 정부는 매년 2월 임시회 전까지 미래보고서에 따른 전년도 추진현황과 차년도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요지를 「국회법」에 따른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둘째, 안 제46조의4제2항은 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규정하고, 의장으로 하여금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 선임 방식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입법례¹⁵⁾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17개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전략’ 의제가 사실상 정책 전 분야에 걸쳐 과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 대표성 확보, 분야별 전문성 결합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로써 15명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¹⁶⁾하는 것에 비추어, 미래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가 일정 범위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미래특별위원회 심의 결과가 미래보고서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미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국가미래전략을 국회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 사례¹⁷⁾와 같이

15)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16)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미래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국회의 입법·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래특별위원회의 타 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등 보완제도가 함께 설계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¹⁸⁾

넷째, 안 제46조의4제1항은 미래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 대상은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제7조¹⁹⁾에 따른 ‘미래보고서 심사 및 권고’와 제10조²⁰⁾에 따른 ‘연도별 추진보고 심사 및 권고’에 한정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예기치 못한 법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참고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하는 미래 보고서를 심의하는 기본 기능에 더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주요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7) 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 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11 참조

18) 참고로, 현행법은 소관 위원회가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예산처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9)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제7조(국회 심사 및 권고) ① 미래보고서의 심사는 「국회법」에 따른 소관 위원회 심사에 따른다.

② 국회는 미래보고서 및 이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국회의 권고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미래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제10조(연도별 추진보고) ① 정부는 매년 2월 임시회 전까지 미래보고서에 따른 전년도 추진현황과 차년도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요지를 「국회법」에 따른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추진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안 제46조의5 신설)

개정안은 미래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미래연구원’과의 협력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미래연구원은 미래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래환경 전망,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미래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표-6] 개정안 조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46조의5(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 ①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u> <u>1. 미래환경 전망,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u> <u>2. 정책 시뮬레이션·영향분석 및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u> <u>3.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u> <u>4. 해외 입법·제도 비교, 국제협력 동향 등 참고연구</u> <u>5. 그 밖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u> <u>② 국회미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 계획과 일정을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일정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u> <u>③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회미래연구원은 제출된 연구결과의 전문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u> <u>④ 연구수행에 필요하면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는 이 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력의 구체적 절차·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설립된 입법부 최초의 출연 연구기관으로,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²¹⁾).

이를 위해 미래연구원은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의 신성장 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을 토대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함(제13조²²⁾).

이러한 설립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미래특별위원회가 미래연구원의 전문적 지원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미래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46조의5제1항은 미래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미래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① 미래환경 전망, 시나리오 등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 ② 정책 시뮬레이션·영향분석 및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③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 등을 추가하고 있음.

21)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

가.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 나. 국가의 신성장동력 / 다. 지속가능한 발전

라. 국민 삶의 질 향상 / 마.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2.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

다만, 「국회미래연구원법」상 미래연구원의 사업은 ① 연구과제로 선정된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과 ②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미래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미래특별위원회 지원 업무를 미래연구원의 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²³⁾

둘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미래연구원의 업무에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을 추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대국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가미래전략의 기본이념²⁴⁾(민주성·공익성 등)에 부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영역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정부의 국민 참여 보장 규정²⁵⁾을 참고하여, 미래특별위원회 차원의 대국민 의견수렴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한편, 미래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국회법」 및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와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위원실이 함께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위원실과 미래연구원 간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수 있음.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회사무처법」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24)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제2조(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국가미래전략의 수립·추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른다.

1.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자유와 인권, 법치 및 민주성에 기초할 것
2.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책임: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
3. 공익성과 포용성: 지역·세대·계층 간 균형과 형평을 도모할 것
4. 증거기반과 전문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분석과 전문적 판단에 기초할 것
5. 개방성과 협력: 다양한 관점·문화의 수용과 국제·지역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것
6. 연속성과 유연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할 것

25)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제6조(참여 보장) ① 정부는 미래보고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절차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분류하여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정리하여 미래보고서에 반영하고, 미래보고서 제출 시 그 요지와 반영 내용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세대·지역·계층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참여절차, 공표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안 제46조의4항은 미래연구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래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연구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회법」 제128조²⁶⁾에 위원회의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도가,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²⁷⁾에 미래연구원의 자료 협조요청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연구원이 미래특별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미래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특별위원회가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환경 전망, 시나리오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국민 의견 분석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연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 연구·지원 인력의 증원 및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²⁸⁾

26)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6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8) 참고로, 2026년 기준 국회미래연구원은 정원 23명(원장 1명 포함)에 예산 51억 7,200만원이 편성됨.

다. 부 칙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7]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46조의5제5항이 미래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미래연구원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절차·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칙 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6